

#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841 |
|------|-----|

제출년월일 : 1999. 1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99. 2. 8)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풍도동 전역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하며 수수료 징수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다. 주민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 개정조례안 : 별 첨

## 관련법령 발췌서 : 별 첨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제34조 및 제46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농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사전예고결과 : 의 건 없 음

- 입법예고기간 : 1999.11.6 ~ 11.26(20일)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별첨
-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별첨
-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별첨

##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수집등 의무제외지역 지정)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제외지역은 안산시 풍도동 전역으로 한다.

제3조(분뇨등의 수집등 대행)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거식화장실·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이하 “분뇨등”이라 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등의 수수료) ①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분뇨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에는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배출자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배출자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분뇨등관련영업자는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1리터당 1원을 징수한다.

1. 분뇨등수집·운반업자
2. 정화조청소업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처리장에 분뇨등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별표 2의 위생처리장사용권으로 징수한다.

제6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②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준농림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경우
4. 일부제한지역에서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별표 4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7조(제한지역외 지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1. 가축사육제한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2.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축산장려가 부적합한 지역
3. 인근 주민의 공중 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8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 분뇨 등 수수료(제4조제1항관련)

| 구           | 분                       | 부과기준     | 수 거 요 금 | 비 고                        |
|-------------|-------------------------|----------|---------|----------------------------|
| 분뇨·<br>축산폐수 | 수거식화장실                  | 18 ℓ 당   | 200원    | 수거요금중<br>1ℓ 당 1원은<br>처리비용임 |
|             | 단독정화조·오수처리<br>시설·축산폐수시설 | 750 ℓ 까지 | 12,060원 |                            |
|             |                         | 1ℓ 초과마다  | 9.8원    |                            |

[별표 2]

### 위생처리장 사용권(제5조제3항관련)

|  |  |
|--|--|
| NO 000001<br>위생처리장사용권<br>(보 관 용)<br><br>일금 1,000원<br>안 산 시 장 | NO 000001<br>위생처리장사용권<br>(제 출 용)<br><br>일금 1,000원<br>안 산 시 장 |
|--|--|

[별표 3]

### 가축사육제한지역(제6조제1항관련)

| 구       | 분   |
|---------|---|
| 전부 제한지역 |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br>원곡동, 목내동,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                           |
| 일부 제한지역 |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동, 장하동,<br>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br>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도동, |

[별표4]

농경용 및 농가부업의 가축사육범위(제6조제4항제4호관련)

| 축종           | 사육두수                       | 축종       | 사육두수              |
|--------------|----------------------------|----------|-------------------|
| 소<br>돼지<br>말 | 2마리 이하<br>5마리 이하<br>2마리 이하 | 양<br>가금류 | 5마리 이하<br>10마리 이하 |

(주) 해당 축종이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는 유사한 축종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 <b>영 수 증</b><br>(업소보관용)<br>NO. 정화조 고유번호 :  |         |           |        |    |   |
|--|---------|-----------|--------|----|---|
| 주소   | 동    번지 |           |        |    |   |
| 성명   |         |           |        |    |   |
| 구분   | 수거량     | 단가<br>(원) | 금액 (원) |    |   |
|  |         |           | 기본     | 초과 | 계 |
| 정화조<br>청소<br>수수료   | ℓ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br>년 월 일<br>사업자등록번호 :<br>상 호 :<br>대 표 자 : (인)<br>주 소 :<br>전 화 번 호 :<br><div style="text-align: right;">귀하</div> |         |           |        |    |   |

※ 본 영수증은 1년간 보관

| <b>영 수 증</b><br>(업소보관용)<br>NO. 정화조 고유번호 :  |         |           |        |    |   |
|--|---------|-----------|--------|----|---|
| 주소   | 동    번지 |           |        |    |   |
| 성명   |         |           |        |    |   |
| 구분   | 수거량     | 단가<br>(원) | 금액 (원) |    |   |
|  |         |           | 기본     | 초과 | 계 |
| 정화조<br>청소<br>수수료   | ℓ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br>년 월 일<br>사업자등록번호 :<br>상 호 :<br>대 표 자 : (인)<br>주 소 :<br>전 화 번 호 :<br><div style="text-align: right;">귀하</div> |         |           |        |    |   |

※ 본 영수증은 1년간 보관

| <b>영 수 증</b><br>(업소보관용)<br>NO. 정화조 고유번호 :  |         |           |        |    |   |
|--|---------|-----------|--------|----|---|
| 주소   | 동    번지 |           |        |    |   |
| 성명   |         |           |        |    |   |
| 구분   | 수거량     | 단가<br>(원) | 금액 (원) |    |   |
|  |         |           | 기본     | 초과 | 계 |
| 정화조<br>청소<br>수수료   | ℓ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br>년 월 일<br>사업자등록번호 :<br>상 호 :<br>대 표 자 : (인)<br>주 소 :<br>전 화 번 호 :<br><div style="text-align: right;">귀하</div> |         |           |        |    |   |

※ 본 영수증은 1년간 보관